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8
----------	------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의자 : 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유성엽 · 이춘석 · 김동철  
김삼화 · 정인화 · 김종회  
이종걸 · 이용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는 바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

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 ·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 · 공예용 ·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 · 유통 · 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임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산자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를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가공·유통·운반·판매·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석재사업자의 등록 등) ①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재사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사업자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1조(전시 및 홍보)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가공·유통·운반·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3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을 받아 생산하지 아니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⑥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 표시 등)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림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석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석재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조사·연구 사업
  - 2. 석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④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착

- 제20조(보고·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장 별칙

제2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를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아 생산하지 아니한 석재제품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등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
4. 제15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